

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

훈 계 · 시 정 요 구

제 목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준공 정산 부적정

기 관 명 충청남도 천안시, 공주시, 보령시, 예산군, 태안군

- 훈 계 대 상 자 ① 충청남도 천안시 ○○구 ○○○동주민센터 지방○○○○○ ○○
○
(전 ○○○사업소 ○○과 지방○○○○○)
② 충청남도 공주시 ○○과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
(전 공주시 ○○과)
③ 충청남도 보령시 ○○○○과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
(전 보령시 ○○사업소)
④ 충청남도 예산군 지방○○○○○ ○○
(전 예산군 ○○○○사업소 지방○○○○○)
⑤ 충청남도 예산군 ○○○○과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
(전 예산군 ○○○○사업소)
⑥ 충청남도 태안군 ○○○○과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
(전 태안군 ○○○○센터 지방○○○○○)

내 용

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6. 1. 15.부터 2016. 9. 11.까지 천안시 ○○○
○○사업소 ○○과에서 ‘○○ ○○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시설공사’의 보험료
사후 정산업무 실무담당자로,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2. 7. 10.부터 2016. 1.
9.까지 공주시 ○○과에서 ‘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 및 강우처리개선사업’의 보험
료 사후 정산업무 실무담당자로,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5. 1. 2.부터 2016.

1. 3.까지 보령시 ○○사업소에서 ‘○○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’의 보험료 사후 정산업무 실무담당자로, 지방○○○○○ ○○은 2014. 10. 21.부터 2015. 6. 30.까지 예산군 ○○○○사업소에서 ‘○○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’ 1차 공사의 보험료 사후 정산업무 실무담당자로,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6. 1. 1.부터 2017. 7. 17.까지 예산군 ○○○○사업소에서 ‘○○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’ 2차, 3차공사의 보험료 사후 정산업무 실무담당자로,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2013. 2. 7.부터 2016. 1. 24.까지 태안군 ○○○○센터에서 ‘○○○ 하수 관거 정비사업’의 보험료 사후 정산업무 실무담당자로 각각 근무하였다.

「지방공무원법」 제48조의 규정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.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·물품·용역, 그 밖에 재정지출의 부담이 되는 계약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·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하고, 검사한 후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에 그 대가를 지급도록 되어 있다.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49조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, 계약서,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여야 하며, 공사감독자는 이에 따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.

「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」¹⁾(국토해양부 고시 제2014-○○○호) 제5조의

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계획·설계·발주·건설사업관리·시공·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, 건설사업관리, 설계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, 협력하여야 하며 건설사업관리 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·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있고, 그 밖에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건설사업관리 용역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.

같은 지침서 제98조의 규정에 따르면 발주청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자가 계약서, 지방서,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, 필요시 시설물 인수기관, 유지관리기관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에 입회·확인토록 조치하도록 되어 있다.

「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」(안전행정부예규 제103호, 2014. 7. 31.) “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”의 규정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국민건강보험료·노인장기요양보험료·국민연금보험료(이하 “국민건강보험료 등”이라 한다)의 납입확인서(사업주와 개인의 부담금을 포함하여 납부한 금액 중 사업주 부담금)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되, 일용근로자는 해당 사업장 단위로 기재된 납입확인서의 납입금액으로 정산하고, 상용근로자(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함)는 소속회사에서 납부한 납입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작업일지, 감독관 근무일지, 임금대장, 출근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 계약이행기간 대비 해당 사업장에 실제로 투입된 일자를 계산하여 보험료를 일할 정산하도록 되어 있다.

1) 「책임감리 현장참여자 업무지침서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13-74호) : 2014. 5. 23. 폐지
「건설사업관리 업무지침서」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304호, 2014.5.23.) : 전부개정, 2015.6.30. 폐지
「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」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-473호, 2015.6.30.)

1.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준공 정산 부적정(천안시)

천안시는 “○○ ○○지구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공사(Q=60m³/일, 하수관로 3.5km)”를 아래 [표1]과 같이 2013. 11. 7. ○○○○○(주)와 1,403백만원으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, 2013. 11. 11. 착공하여 2016. 3. 29. 준공하였다.

[표1] ○○ ○○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시설공사 추진 현황

구 분	시설공사	감리용역	비고
계약명	○○ ○○지구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공사	○○공공하수처리시설 2단계증설 및 마을 하수도(2개소)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	
계약상대자	(주)○○○○○○	(주)○○○○○○종합건축사사무소, (주)○○○○○○, (주)○○	
계약일	2013. 11. 07.	2013. 05. 20	
준공일	2016. 03. 29.	2016. 12. 30	
계약기간	2013. 11. 07. - 2016. 3. 29.	2013. 05. 20. ~ 2016. 12. 30	
계약금액	1,402,874천원	1,782,000천원	
준공금액	1,507,350천원	1,873,662천원	

※ 천안시 제출자료 재구성

천안시 ○○○사업소 ○○과는 “○○ ○○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시설공사” 준공 시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대상 여부를 현장작업일지, 감독관 근무일지, 임금대장, 출근부 등 증빙서류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.

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준공도서(국민건강보험료 등 납부확인서) 검토를 소홀히 하여, 아래 [표2]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료 등 6,346천원의 준공대가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.

[표2] ○○ ○○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공사 국민건강보험료 등 과다 지급 현황

<단위: 원>

구 분	①준공시 지급액	②감사시 재산정액	과다지급액(①-②)
국민건강보험료	6,052,800	3,026,400	3,026,400
국민연금보험료	3,016,520	1,508,260	1,508,260
노인장기요양보험료	396,200	198,100	198,100
[보험료 소계]	9,465,520	4,732,760	4,732,760
제경비(이윤, 부가세등)	3,226,480	1,613,240	1,613,240
합 계	12,692,000	6,346,000	6,346,000

※ 천안시 제출자료 재구성

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“○○ ○○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시설공사”의 건강보험료 등 준공대가 과다지급에 대한 실무책임이 있다.

2.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준공 정산 부적정(공주시)

공주시는 “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 및 강우처리 개선사업(Q=42,100m³/일)”을 아래 [표3]과 같이 2013. 6. 28. ○○○○(주)와 3,005백만 원으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, 2013. 6. 28. 착공하여 2015. 8. 12. 준공하였다.

[표3] 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 및 강우처리 개선사업 추진 현황

구 분	시설공사	감리용역	비고
계약명	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 및 강우처리 개선사업	공주시 관내 공공하수도사업 건설공사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	
계약자	○○○○(주)	(주)○○○○○○○○, (주)○○○○○○	
계약일	2013.6.28.	2013.9.5.	
준공일	2015.8.12.	2017.7.14.	
계약기간	2013.6.28. - 2015.8.12.	2013.9.9. - 2017.7.14.	
계약금액	3,005,687천원	1,500,000천원	최초
준공금액	3,267,057천원	1,979,600천원	

※ 공주시 제출자료 재구성

공주시 ○○과는 “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 및 강우처리 개선사업” 준공 시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대상 여부를 현장작업일지,

감독관 근무일지, 임금대장, 출근부 등 증빙서류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.

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준공도서(국민건강보험료 등 납부확인서) 검토를 소홀히 하여, 아래 [표4]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료 등 27,329천원의 준공대가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.

[표4] 하수처리시설 고도 및 강우처리 개선사업 건강보험료 등 과다 지급 현황

<단위: 원>

구 분	①준공시 지급액	②감사시 재산정액	과다지급액(②-①)
국민건강보험료	8,103,180	-	8,103,180
국민연금보험료	11,748,790	-	11,748,790
노인장기요양보험료	530,340	-	530,340
[보험료 소계]	20,382,310	-	20,382,310
제경비(이윤, 부가세등)	6,947,670		6,947,670
합 계	27,329,980	-	27,329,980

※ 공주시 제출자료 재구성

지방○○○○ ○○○은 “공공하수처리시설 고도 및 강우처리 개선사업”의 건강보험료 등 준공대가 과다지급에 대한 실무책임이 있다.

3.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준공 정산 부적정(보령시)

보령시는 “○○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(L=4.529km)”를 아래 [표5]와 같이 2013. 7. 29. ○○○(주)와 2,456백만 원으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, 2013. 8. 1. 착공하여 2015. 9. 20. 준공하였다.

[표5] ○○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추진 현황

구 분	시설공사	감리용역	비고
계약명	○○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	○○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시공감리 용역	
계약상대자	○○○○(주)	(주)○○○○○○○○, ○○○○○○○○(주)	
계약일	2013.7.29.	2013.10.2.	
준공일	2015.9.20.	2015.10.26.	
계약기간	2013.8.1. - 2015.9.20.	2013.10.7. - 2015.10.26.	
계약금액	2,455,790천원	367,993천원	
준공금액	2,599,788천원	357,077천원	

※ 보령시 제출자료 재구성

보령시 ○○사업소는 “○○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” 준공 시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대상 여부를 현장작업일지, 감독관 근무일지, 임금대장, 출근부 등 증빙서류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.

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준공도서(국민건강보험료 등 납부확인서) 검토를 소홀히 하여, 아래 [표6]과 같이 국민건강보험료 등 16,533천원의 준공대가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.

[표6] 국민건강보험료 등 과다 지급 현황

<단위: 원>

구 분	①준공시 지급액	②감사시 재산정액	과다지급액(②-①)
국민건강보험료	4,962,170	-	4,962,170
노인장기요양보험료	324,710	-	324,710
국민연금보험료	7,044,580	-	7,044,580
[보험료 소계]	12,331,460	-	12,331,460
제경비(이윤, 부가세등)	4,201,926	-	4,201,926
합 계	16,533,386	0	16,533,386

※ 보령시 제출자료 재구성

지방○○○○ ○○○은 “○○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공사”의 건강보험료 등 준공대가 과다지급에 대한 실무책임이 있다.

4.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준공 정산 부적정(예산군)

예산군은 “○○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(Q=70m³/일, L=2.7km)”을 아래 [표7]과 같이 2014. 8. 19. ○○○○○○(주)와 1개사와 1,801백만 원으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, 2014. 8. 19. 착공하여 2017. 5. 24. 준공하였다.

[표7] ○○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 현황

구 분	시설공사	전기공사	비고
계약명	○○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	○○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전기공사	
계약상대자	○○○○○○○(주), (주)○○○○○	(주)○○○○○	
계약일	2014.8.19.	2015.4.14.	
준공일	2017.5.24.	2016.12.21.	
계약기간	2014.8.19. - 2017.5.31.	2015.4.17. - 2017.1.5.	
계약금액	1,801,630천원	38,684천원	
준공금액	2,289,870천원	42,855천원	

※ 예산군 제출자료 재구성

예산군 ○○○○사업소는 “○○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” 준공 시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대상 여부를 현장작업일지, 감독관 근무일지, 임금대장, 출근부 등 증빙서류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.

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준공도서(국민건강보험료 등 납부확인서) 검토를 소홀히 하여, 아래 [표8]과 같이 국민건강보험료 등 28,247천원의 준공대가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.

[표8] ○○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민건강보험료 등 과다 지급 현황

<단위: 원>

구 분	①준공시 지급액	②감사시 재산정액	과다지급액(②-①)
국민건강보험료	7,974,235	443,700	7,530,535
국민연금보험료	10,392,200	1,136,700	9,255,500
노인장기요양보험료	532,647	29,050	503,597
퇴직공제부금	9,973,734	7,274,400	2,699,334
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발행	2,039,129	791,870	1,247,259
[소계]	30,911,945	9,675,720	21,236,225
제경비(이윤, 부가세등)	465,283,627	458,272,005	7,011,622
합 계	496,195,572	467,947,725	28,247,860

※ 예산군 제출자료 재구성

지방○○○○○ ○○과 지방○○○○○ ○○○은 “○○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” 1차 공사(9,146천 원) 및 2차·3차(19,101천 원) 공사의 건강보험료 등 준공대가 과다지급에 대한 실무책임이 있다.

5. 공공하수도 설치사업 준공 정산 부적정(태안군)

태안군은 “○○○ 하수관거 정비사업(L=11.1km)”을 아래 [표9]와 같이 2012. 4. 19. ○○○○○○(주)와 6,316백만 원으로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, 2012. 4. 25. 착공하여 2015. 5. 10. 준공하였다.

[표9] ○○○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현황

구 분	시설공사	감리용역	비고
계약명	○○○(탄독) 하수관거 및 펌프장 설치공사	○○리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외 4개지구 통합전면책임감리용역	
계약상대자	○○○○○○○(주)	(주)○○, ○○(주), (주)○○	
계약일	2012.4.19.	2012.3.27.	
준공일	2015.5.10.	2015.6.18.	
계약기간	2012.4.25. - 2015.5.10.	2012.4.2. - 2015.6.18.	
계약금액(최초)	6,316,326천원	2,161,000천원	
준공금액	6,384,024천원	2,337,000천원	

※ 태안군 제출자료 재구성

태안군 ○○○○센터는 “○○○ 하수관거 정비사업” 준공 시 계약상대자가 청구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정산대상 여부를 현장작업일지, 감독관 근무일지, 임금대장, 출근부 등 증빙서류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.

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준공도서(국민건강보험료 등 납부확인서) 검토를 소홀히 하여, 아래 [표10]과 같이 국민건강보험료 등 12,895천 원의 준공대가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.

[표10] ○○○ 하수관거 정비사업 건강보험료 등 과다 지급 현황

<단위: 원>

구 분	①준공시 지급액	②감사시 재산정액	과다지급액(①-②)
국민건강보험료	2,881,000	-	2,881,000
국민연금보험료	7,011,000	-	7,011,000
노인장기요양보험료	194,000	-	194,000
[보험료 소계]	10,086,000	-	10,086,000
제경비(이윤, 부가세등)	2,809,000	-	2,809,000
합 계	12,895,000	-	12,895,000

※ 태안군 제출자료 재구성

지방○○○○ ○○○은 “○○○ 하수관거 정비사업”의 건강보험료 등 준공대가 과다지급에 대한 실무책임이 있다.

조치할 사항 충청남도 천안시장, 공주시장, 보령시장, 예산군수, 태안군수는

[훈계] 위 관련자들을 훈계처분하시기 바랍니다.

[시정] 계약상대자에게 건강보험료 등을 과다하게 지급한 준공대가 6,346천원, 27,329천원, 16,533천원, 28,247천원, 12,895천원 등 총 91,352천원을 회수하고, 관련

규정과 절차를 준수하여 국고보조금을 반납 조치하고,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.